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125호 2015. 12. 18(금)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 560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
- 남원시 규칙 제 561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 남원시 규칙 제 562 호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 남원시 규칙 제 563 호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23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 350 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24
- 남원시 훈령 제 351 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27
- 남원시 훈령 제 352 호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32
- 남원시 훈령 제 353 호 남원시 문화도시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4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 2015 - 104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36
- 남원시 고시 제 2015 - 103 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37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5 - 1529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회 담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18일

남원시 규칙 제 560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총괄) 조정(별표)]

- 총 계 : 1,057명 → 1,057명(변동없음)
- 본 청 : 515명 → 518명(+3명)
 - ◆ 홍보전산과 : 22명 → 22명
 - 기계운영 9급 1명 → 기계운영 9급 0명(-1명)
 - 공업7급(기계) 0명 → 공업7급(기계) 1명(+1명)
 - 전기운영 8급 1명 → 전기운영 8급 0명(-1명)
 - 공업8급(전기) 0명 → 공업8급(전기) 1명(+1명)
 - ◆ 문화관광과 : 29명 → 31명(+2명)
 - 행정·공업·시설 6급 0명 → 행정·공업·시설 6급 1명(+1명)
 - 사무운영 6급 1명 → 사무운영 6급 0명(-1명)
 - 행정6급 3명 → 행정6급 4명(+1명)
 - 행정9급 4명 → 행정9급 5명(+1명)
 - ◆ 교육체육과 : 19명 → 19명
 - 기계운영 9급 1명 → 기계운영 9급 0명(-1명)
 - 공업9급(기계) 0명 → 공업9급(기계) 1명(+1명)
 - ◆ 재정과 : 42명 → 41명(-1명)
 - 행정·세무 6급 5명 → 행정·세무 6급 4명(-1명)
 - 행정6급 1명 → 행정6급 2명(+1명)
 - 공업7급 2명 → 공업7급 1명(-1명)
 - ◆ 경제과 : 23명 → 22명(-1명)
 - 행정·농업·시설 6급 2명 → 행정·농업·시설 6급 1명(-1명)
 - ◆ 원예허브과 : 23명 → 23명
 - 농촌지도사 1명 → 농촌지도사 0명(-1명)
 - 행정7급 1명 → 행정7급 2명(+1명)
 - ◆ 산림과 : 24명 → 25명(+1명)
 - 공업 7급 0명 → 공업 7급 1명(+1명)
 - ◆ 건설과 : 20명 → 20명
 - 사무운영 9급 1명 → 사무운영 9급 0명(-1명)
 - 행정7급 0명 → 행정7급 1명(+1명)

- 교통과 : 17명 → 19명(+2명)
 - 행정·공업·시설 8급 0명 → 행정·공업·시설 8급 1명(+1명)
 - 행정9급 0명 → 행정9급 1명(+1명)
- 직속기관 : 167명 → 167명
 - 농업기술센터 : 52명 → 52명
 - 행정7급 1명 → 행정7급 0명(-1명)
 - 농촌지도사 22명 → 농촌지도사 23명(+1명)
- 사 업 소 : 77명 → 77명
 - 환경사업소 : 26명 → 26명
 - 전기운영 9급 1명 → 전기운영 9급 0명(-1명)
 - 공업8급(전기) 2명 → 공업8급(전기) 3명(+1명)
- 면 : 177명 → 174명(-3명)
 - 대강면 : 12명 → 11명(-1명)
 - 행정 9급 1명 → 행정 9급 0명(-1명)
 - 보절면 : 12명 → 11명(-1명)
 - 행정·시설 8급 1명 → 행정·시설 8급 0명(-1명)
 - 산동면 : 12명 → 11명(-1명)
 - 행정 9급 1명 → 행정 9급 0명(-1명)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18일

남원시 규칙 제 561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무분장표 (제3조 관련)

기관별	분 장 사 무
시민소통실	1. 총괄업무 지원 및 조정 2. 주요행사 일정조정 지원 3.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구선정 및 시행 5. 면·동 주민숙원사업 설계 및 감독 6. 새마을시설물 관리 7. 생활민원처리 8. 120민원봉사대 운영 9. 신문고 설치운영 10. 민원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교육체육과	1.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발굴 2.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3. 지역 명문고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4.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5.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6. 외국어교육 향상 업무 7. 학교교육관련 경비지원 8. 남원교육발전협의회 운영지원 9. 학교급식 지원 10. 지역인적자원 개발 11. (재)춘향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12. (재)전북인재육성재단 지원업무 전반(장학숙, 장학생) 13. 평생학습도시 활성화계획 수립 14.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1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지원 16. 평생학습센터 운영 17.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마당 운영관리 18.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19. 평생학습 축제 및 심포지엄 등 개최 20. 평생학습 운영단체 관리 21. 성인 문자해득교육 업무 22.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 23. 공무원 소양교육 및 연찬 24. 춘향골아카데미 운영관리 25.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27.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28. 시민교육관련 업무 29. 시민 건전생활 활성화시책 추진

기관별	분 장 사 무
	30. 시민 체력증진시책 발굴추진 31.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32. 무도장 및 무도학원에 관한 사항 33. 직장 생활체육활동 지원 34. 체육시설업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5.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36. 여가·레저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37. 춘향골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38.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추진 39.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0. 체육공원시설 조성관리 41. 장학숙 운영 기본계획 및 예산수립 지원 42. 장학숙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지원
주민복지과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3. 복지시책 발굴 및 평가 4. 사회복지 지표조사 5. 복지서비스 홍보 및 교육 6.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구호금품 지급) 7. 사회복지공무원 관리 8. 사회취약계층 지원·관리 9. 기초생활보장업무 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수립 11. 차상위계층 지원·관리 12.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관리 13. 정신요양시설 지원 및 관리 14.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일 행사 15. 김주열 열사 추모 사업 16. 현충시설물 관리 1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 18. 의료급여 중복청구 등 사후관리 19.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20.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및 자격관리 21.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22. 의료급여기관 지도점검 23.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24.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5.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 26. 장애인 보장구 지원 27. 장애인 등록 및 등급조정 결정 2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리 29. 장애인복지에 관한 신고 30. 장애인관련 민원처리 31. 장애인단체 육성지도 32. 장애인시설 보호지원

기관별	분 장 사 무
	33.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관리 34.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35.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36. 장애인 후생복지 37.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38.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등) 39.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40. 신규 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41. 상담실 운영(복지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관계부서 연계 등) 42.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43.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44. 지역자활센터 관리 45. 자활프로그램 개발 46. 자활기금 관리 47. 저소득층 취업지도 및 알선 48. 저소득층 직업훈련 및 기술습득 지원 49. 저소득층 일자리 개발 및 제공 50. 주민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51. 긴급복지지원 52.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53. 이웃돕기 성금 관리 및 지원 54. 부랑인·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관리 5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56.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57. 보건·복지 연계사업 58. 복지위원 관리 59.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60. 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정보제공 61. 주거관련 민간단체 연계
도시과	1.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2. 지구단위계획 수립 3.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시행 인가 4. 개발촉진지구계획 수립 5. 개발행위허가 6.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 7.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8. 도시공원 기본 및 조성계획 수립 9.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10. 토지이용규제 관리 11. 도시개발사업 결정 및 인가 12. 구 역사 주변개발계획 수립 13.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14. 도시통계 작성

기관별	분 장 사 무
	15. 건설동원 총무계획 16. 도시가로망 정비계획 수립 17. 시의 국도 및 시의 시도 정비 18. 도시가로망사업 시행(대로, 중로, 소로) 19.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 20.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수용 21.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위 등기 22.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로개설 시행(도시계획지역) 23.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수립 24. 전선지중화사업 시행 25.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및 지도 26.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위반자 조치 27.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28. 도시공원 조성공사 29.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조성공사 시행 30. 허브테마파크 조성공사 31. 온천개발 업무 32. 일반산업단지 조성 33. 기술관련 용역(사업) 시행 34. 농공단지 지정 및 조성 35.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업무 총괄 및 토지·지상물 보상 업무 36. 골프장 유치에 관한 사항 37. 골프장 조성 지원업무 38. 골프장 조성에 따른 주변마을 지원 39. 신생마을 관리
교통과	1. 운수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2. 운수사업체 지도감독, 운전자 교육, 교통안전점검 3. 자동차운수사업 인·허가 및 등록 4. 택시 및 버스 사업구역 조정, 운송시설 확인점검 5.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6. 여객자동차 터미널 면허 및 지도감독 7.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및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 8. 시내버스 임시운행허가 9.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요금신고 10.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 11. 물류유통단지 조성관리 12. 헬기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전시대비 수송동원계획 수립 및 보안 14. 법령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관외 통보분 포함) 15. 운수조종사 교육 및 미이수자 행정처분 16. 교통불편신고 처리 17.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대책 수립 18. 주차장설치 종합계획 수립 19. 일반주차장 신고수리 및 공영주차장 관리

기관별	분 장 사 무
	2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21.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22. 무단방치차량 처리 23.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폐차업) 허가 및 지도 24. 각종 교통사고 처리 및 지도관리 25. 교통영향평가 26. 무등록운행차량 단속 27. 자동차의 각종 등록 및 번호판 교부 28.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체 지도·감독 29. 자동차 등록원부 전산입력 관리 30. 자동차 차대 및 원동기 각자 신고 31. 자동차의 정비 및 검사 32. 자동차 임시 운행허가 및 자가용 사용신고 33. 자동차의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행정처분 34. 건설기계 등록관리 및 제반사항 관리 35. 이륜자동차(동지역)에 관한 사항 36. 철도·공항관련 업무 37.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8.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구축사업 추진 39. 삭도·궤도사업 허가 40.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41. 자전거 이용시설사업 시행 42.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18일

남원시 규칙 제 562 호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심의·조정함으로서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를 “심의·조정하여 민원해결도를 높이고”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원1회방문처리”란 민원인이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 번 남원시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주관과”라 함은”을 ““주관과”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 한다”를 “사람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소속 국·과장급”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국장·과장급”으로, “추가한다.”를 “추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KT남원지사, 한국전력공사남원지점, 남원소방서,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및 협회의 관계기관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및 협회의 관계기관 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의 제목 “(위원의 임무)”를 “(위원장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1항 중 “2인과 서기 1인”을 “2명과 서기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와 민원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과 민원담당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심의대상)”을 “(기능)”으로 하고, 제6조제1호 중 “인·허”를 “인허”로, “지정”을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무종합 심의회””를 ““민원실무심의회””로, “해소”를 “해소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협의 조정해야”를 “협의·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를 관한 사항

제6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의안건은 관련부서가 충분히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부여

제9조 제2호 전단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있음”을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개선 건의토록”을 “개선·건의하도록”으로 한다.

제10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회 안건 심의결정 통지 및 처리)”를 “(안건 심의결정 통지 및 처리)”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심의 결정”을 “심의·결정”으로, “송부한다”를 “보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수당 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제12조 본문 중 “등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등은 예산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임사항)”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안건 및 내용 (제5조 관련)

- 민원명 :
- 민원유형 :
- 주관과 및 관련부서

민 원 사 항		
민 원 인	성 명	
	주 소	
접수일자		
출원요지		
처리내용		
담당부서 의 건		

○ 관련법규 :

○ 참고사항 :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제8조 관련)

민원명		민원유형		접수 및 처리일자	접수: 처리:
민원인	성명				
	주소				
출원요지					
심의 결정사항					
심 의 결 결	심의의결 년월일 :				
	심의위원	가	부	심의위원	가 부
	위원 위원				

○ 회의록: 붙임

[별지 제3호서식]

민원1회방문처리 내용 및 의견(제10조 관련)

민 원 사 항			
민 원 명			민원사항
민 원 인	주 소		
	성 명		
접수일자			처 리 기 간 까지
처리일자			
출원요지			
처리내용			
담당부서 의 견			

○ 관련법규 :

○ 참고사항 :

○ 붙 임 : 민원서류 사본 1부.
 그 밖에 서류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에 서 접수하는 민원에 대하여 민 원1회방문만으로 처리하는 경 우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u>심의·조정함으로서</u> <u>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u> 시민 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 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u>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u> <u>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민원1회방문처리</u>"라 함은 <u>민원을 접수한 후 민원접수기</u> <u>관에서 민원인과의 의견개진</u> <u>등이 필요시 민원인에게 관청</u> <u>방문 요구를 1회만하고 민원</u> <u>처리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u> <u>원이 직접 이행하는 것을 말</u> <u>한다.</u></p> <p>2. "<u>주관과</u>"라 함은 민원을 주 관하며 처리할 실·과·소를 말한다.</p>	<p>제1조(목적) ----- ----- ----- ----- <u>심의·조정하여</u> <u>민원해결도를 높이고</u>----- ----- <u>남원시</u> <u>민원조정위원회의</u> ----- ----- -----.</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u>민원1회방문처리</u>"란 민원 <u>인이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u> <u>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u> <u>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u> <u>등의 일로 두 번 남원시청을</u> <u>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u> <u>말한다.</u></p> <p>2. "<u>주관과</u>"란 ----- ----- -----.</p>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소속 국·과장급 공무원 중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민원과장으로 하되 필요시 관계 실·과·소장을 추가한다.

2. 위촉위원은 전라북도 남원교육청, 한국통신남원전화국, 한국전력공사남원지점, 남원소방서 기타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및 협회의 관계기관 중 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신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국장·과장급 공무원 중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민원과장으로 하되 필요시 관계 실·과·소장을 추가

2. 위촉직 위원은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KT남원지사, 한국전력공사남원지점, 남원소방서,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및 협회의 관계기관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신 설>

제4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동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주관과의 업무담당주사와 민원담당주사가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③ (생략)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및 협회의 관계기관 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동간사 및 서기) ① -----
2명과 서기 1명-----.

② -----
업무담당과 민원담당이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및 인
·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의 지정

2. 주관과 "실무종합 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
해야 할 사항

4.(생략)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
"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6.(생략)

7. 기타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① (생략)

② 위촉위원은 당해 위원이 속
한 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
에 참석한다.

③·④ (생략)

제9조(안전심의의 처리) 위원회
의 안전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
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

-----.

1. ----- 인
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 "민원실무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에 관한
사항

3. ----- 협의·조정해
야 할 사항

4.(현행과 같음)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
로 판단되는 재심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심의의 처리) -----
----- 따라 -
-----.

1. 심의안건은 관련부서가 충분

서의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부여

2.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부서에 권고

4. (생략)

제10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실·과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8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안건 심의결정 통지 및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

히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부여

2. ----- 경우에는

----- 통지. -----

----- 있다.

3. -----

----- 개선·건의하도록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의자료 제출) -----

----- 경우에는 -----
----- 따
라 -----.

제11조(안건 심의결정 통지 및 처리) ①----- 심의·결정-----

----- 보낸다.

다.

②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남원시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마련-----
-----.

제12조(수당 등) -----
----- 등은 예산의 범위-----

----- .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 시
행에 -----
-----.

심의를 거친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18일

남원시 규칙 제 563 호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18일

남원시 훈령 제 350 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4, 5, 6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부서별) 개정 (별표 1,2,4,5,6)]

- 홍보전산과 : 22명 → 22명
 - 기계운영 9급 1명 → 기계운영 9급 0명(-1명)
 - 공업7급(기계) 0명 → 공업7급(기계) 1명(+1명)
 - 전기운영 8급 1명 → 전기운영 8급 0명(-1명)
 - 공업8급(전기) 0명 → 공업8급(전기) 1명(+1명)
- 문화관광과 : 29명 → 31명(+2명)
 - 행정·공업·시설 6급 0명 → 행정·공업·시설 6급 1명(+1명)
 - 사무운영 6급 1명 → 사무운영 6급 0명(-1명)
 - 행정6급 3명 → 행정6급 4명(+1명)
 - 행정9급 4명 → 행정9급 5명(+1명)
- 교육체육과 : 19명 → 19명
 - 기계운영 9급 1명 → 기계운영 9급 0명(-1명)
 - 공업9급(기계) 0명 → 공업9급(기계) 1명(+1명)
- 재정과 : 42명 → 41명(-1명)
 - 행정·세무 6급 5명 → 행정·세무 6급 4명(-1명)
 - 행정6급 1명 → 행정6급 2명(+1명)
 - 공업7급 2명 → 공업7급 1명(-1명)
- 경제과 : 23명 → 22명(-1명)
 - 행정·농업·시설 6급 2명 → 행정·농업·시설 6급 1명(-1명)
- 원예허브과 : 23명 → 23명
 - 농촌지도사 1명 → 농촌지도사 0명(-1명)
 - 행정7급 1명 → 행정7급 2명(+1명)
- 산림과 : 24명 → 25명(+1명)
 - 공업 7급 0명 → 공업 7급 1명(+1명)
- 건설과 : 20명 → 20명
 - 사무운영 9급 1명 → 사무운영 9급 0명(-1명)
 - 행정7급 0명 → 행정7급 1명(+1명)
- 교통과 : 17명 → 19명(+2명)
 - 행정·공업·시설 8급 0명 → 행정·공업·시설 8급 1명(+1명)

- 행정9급 0명 → 행정9급 1명(+1명)
- 농업기술센터 : 52명 → 52명
 - 행정7급 1명 → 행정7급 0명(-1명)
 - 농촌지도사 22명 → 농촌지도사 23명(+1명)
- 환경사업소 : 26명 → 26명
 - 전기운영 9급 1명 → 전기운영 9급 0명(-1명)
 - 공업8급(전기) 2명 → 공업8급(전기) 3명(+1명)
- 대강면 : 12명 → 11명(-1명)
 - 행정 9급 1명 → 행정 9급 0명(-1명)
- 보절면 : 12명 → 11명(-1명)
 - 행정·시설 8급 1명 → 행정·시설 8급 0명(-1명)
- 산동면 : 12명 → 11명(-1명)
 - 행정 9급 1명 → 행정 9급 0명(-1명)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18일

남원시 훈령 제 351 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각 “고충처리담당”을, “생활민원담당”으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예술담당·테마관광담당·국악진흥담당·축제기획담당·관광개발담당·문화재담당”을 “문화예술담당·테마관광담당·국악진흥담당·축제기획담당·예촌운영담당·관광개발담당·문화재담당”으로 하고, 예촌운영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4조 중 “세정담당·징수담당·세외수입담당·재산세담당·과표조사담당·경리담당·재산관리담당”을 “세정담당·징수담당·세외수입담당·재산세담당경리담당

· 계약담당 · 재산관리담당”으로 하고, “세정담당 · 징수담당 · 세외수입담당 · 재산세담당 · 과표조사담당”을 “세정담당 · 징수담당 · 세외수입담당 · 재산세담당”으로 하며, “경리담당은 지방행정주사로”를 “경리담당 · 계약담당은 지방행주사”로 한다

제15조 중 “경제담당 · 일자리지원담당 · 투자유치담당 · 기업지원담당 · 전통산업담당 · 에너지담당”을 “경제담당 · 일자리지원담당 · 투자유치담당 · 기업지원담당 · 전통산업자원담당”으로 하고, “전통산업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에너지담당은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를 “전통산업자원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보한다.

제21조 중 “도시계획담당 · 도시정비담당 · 지역개발담당 · 산업용지조성담당”을 “도시계획담당 · 도시정비담당 · 도시재생담당 · 산업용지조성담당”으로 하고, “지역개발담당은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를 “도시재생담당”은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시민소통실) 시민소통실에 <u>시민소통담당·고충처리담당·소규모시설담당</u>을 두고, 시민소통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u>고충처리담당</u>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u>소규모시설담당</u>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p>	<p>제5조의2(시민소통실) ----- -----<u>생활</u> <u>민원담당</u> ----- ----- ----- ----- -----<u>생활민원담당</u> ----- ----- ----- ----- ----- -----.</p>
<p>제9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에 <u>문화예술담당·테마관광담당·국악진흥담당·축제기획담당·관광개발담당·문화재담당</u>을 두고, 문화예술담당·국악진흥담당·축제기획담당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u>테마관광담당·관광개발담당·문화재담당</u>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u>주사</u>로 보한다.</p>	<p>제9조(문화관광과) ----- ----- -----<u>축제기</u> <u>획담당·예촌운영담당·관광개</u> <u>발담당</u>----- ----- ----- ----- ----- ----- ----- ----- ----- ----- -----<u>주사</u>로, <u>예촌운영담당</u>은 <u>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u> 또 는 지방시설<u>주사</u>로 ----.</p>

보한다.

제21조(도시과) 도시과에 도시계획담당·도시정비담당·지역개발담당·산업용지조성담당을 두고, 도시계획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도시정비담당은 지방시설주사로, 지역개발담당은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산업용지조성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주사로 ----.

제21조(도시과) -----
 -----도
시재생담당-----

 -----, 도시재
생담당은 -----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18일

남원시 훈령 제 352 호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청원경찰의 정수

부서별		계	경비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계		42	42	0
본청	소계	27	27	
	총무과	4	4	
	문화관광과	3	3	
	교육체육과	2	2	
	여성가족과	1	1	
	산림과	3	3	
	도시과	1	1	
	건설과	7	7	
	교통과	4	4	
	건축과	2	2	
직속기관	소계	1	1	
	보건소	1	1	
사업소	소계	13	13	
	시설사업소	8	8	
	환경사업소	2	2	
	상수도사업소	3	3	

남원시 문화도시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12월 18일

남원시 훈령 제 353 호

남원시 문화도시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에서 위임된 남원시 문화도시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문화도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추진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사업 진행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
4. 각종 회의 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5.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 기록
6. 그 밖에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3조(구성)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기획팀장 각 1명 및 팀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마친 후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고시 제2015 - 10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5-250호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역사공원)으로 결정된 실상사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04일

남 원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역사공원)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2	실상사 공원	역사공원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1번지일원	63,475	전라북도 고시 (제2015-250호) (2015.11.13.)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총괄)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합 계	63,475	2,904	
시 설	소 계	39,449	2,904
	교통시설	837	-
	조경시설	3,669	-
	휴양시설	164	20
	교양시설	27,542	1,489
	편익시설	5,367	1,147
	관리시설	1,870	248
녹 지	24,026	-	

3.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역사공원)조성계획 관련도서 : 실음생략

남원시 고시 제2015 - 103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공단공원/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부칙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결정의 실효에 따라 금회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18일

남 원 시 장

1.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공단공원)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공단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9	공단공원	근린공원	장국리 293-1일원	2,486	감) 2,486	-	전라북도 고시 제1994-329호 ('94.11.26)	

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공단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공단 공원	○ 폐지 면적 2,468㎡→0㎡ (감 2,48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기존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고시된 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부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설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폐지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공단공원)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도 : 실음생략

남원시 공고 제2015 -1529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 및 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수급자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감면받는 수급자 대상 기준을 개정하고 법제처 및 관련부처 등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결과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불합리 규정 등 개선촉구와 관련 일부 조문데 대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받는 기초수급자 대상 기준 변경

(안 제18조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정비

다.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삭제(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월 6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환경과 청소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3-620-6709)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안 : 붙임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1. .
 제출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 및 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수급자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감면받는 수급자 대상 기준을 개정하고 법제처 및 관련부처 등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결과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불합리 규정 등 개선촉구와 관련 일부 조문데 대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받는 기초수급자 대상 기준 변경
 (안 제18조제1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 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정비
- 다.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삭제(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인정보보호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2. . ~ 2015. 12.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호 및 영”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을 “폐기물을 5톤(공사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을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 현재를”을 “지정할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로, “말일”을 “31일”로 한다.

제3조의2 제2항 중 “마을에 대하여”를 “마을은”으로 한다.

제4조 중 “등으로서”를 “등으로”로 한다.

제5조 중 “유지하도록 하여야”를 “유지하여야”로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 중 “1월”을 “1개월”로, “명할”을 “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를 명하여야”를 “조치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료일로부터”를 “만료일부터”로, “명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하고자 하는”을 “배출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배출하고자 하는”을 “배출하려는”으로, “일반용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환경관리원 청소용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완료시까지)로 인한”을 “완료시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본문 중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대하여”를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 제2호 중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를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항 제1항 중 “일반용 봉투”를 “소각용 봉투, 매립용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각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의 색깔은 옅은 분홍색, 매립용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제작함에 있어”를 “제작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시하고”를 “분명하게 적고”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변경사항에 대하여”를 “변경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사 후 6개월 이하의 전입자는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10장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쓰레기봉투 인증스티커를 부착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14조 제2호 중 “규격봉투에 대하여”를 “쓰레기봉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현금으로 환불”을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자로 하여금”을 “한다)에게”로, “명시하여”를 “분명하게 적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영·시행규칙”을 “법·영·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관리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남원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대행업체에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리업자에 대하여”를 “처리업자에게”로,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가구당 연 1,300원을 합산하여 마을단위로 부과·징수하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에서의 제18조”를 “제18조”로, “일반용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외의”를 “외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 일반용봉투”를 “사람에게 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18조제2항 중 “일반용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용봉투”를 “쓰레기봉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을 “독립채산지역은”으로 한다.

제2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판 매 소 지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영업소 위치				
<p>「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p>남 원 시 장 귀하</p>				
구비서류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뒷쪽)

< 변경사항 >

일 자	내 용	확 인

- ※ 참고사항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자동차는 차량종류·색상·번호·투기자 성명 등을 함께 기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 ----- -----시행규칙 ----- ----- -----시행에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가. ~ 다. (생략)</p> <p>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p>	<p>제2조(정의) ----- -----뜻은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폐기물을 5톤(공사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 ----- -----</p>

에 따라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수거가 용이한 장소에 배출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적용 대상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5.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로 인한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

-----환경관리원 청소용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3. -----

-----쉬운 -----

-----예외로 한다.

4. (현행과 같음)

5. -----
-----완료시까지)
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폐

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시장은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불법소각한 소각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부과 금액의 50 퍼센트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 계좌에 송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부

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

③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삭 제>

과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에 지급하되 이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
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음식물쓰레기는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4. (생략)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색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10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

- 1. (현행과 같음)
- 2. -----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

3.·4. (현행과 같음)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 소각용 봉투, 매립용 봉투, -----
-----.

② 소각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색, 매립용 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판매소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1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판매소 지정취소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규격 봉투에 대하여 소비자가 교환 요구를 하면 즉시 교환하며,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판매 금액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3. (생략)
4. 판매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쓰레기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 후 6개월 이하의 전입자는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10장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쓰레기봉투 인증스티커를 부착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1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

-----.

1. (현행과 같음)
2. -----쓰레기봉투는 -----
3. (현행과 같음)
4. -----

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남원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대행업체에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익증진,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
-----처리업자에게 -----

비용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이 조례에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반용봉투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

-----.

③ (현행과 같음)

④ -----
-----외의 -----
-----.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

-----사람에게 쓰레기봉투-----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 (현행과 같음)

② ----- 쓰레기봉투-----

-----.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쓰레기봉투-----
--해당-----

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

-----따라 -----

-----독립채산지역은 -----

-----.

제22조(시행규칙) -----시행에

-----.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	--------------------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